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법정동 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 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input type="checkbox"/> 매매	<input type="checkbox"/> 증여	<input type="checkbox"/> 족탁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기타
<p>「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소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군산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만 제출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위임장

상기 신청인에게 차량()의 이전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인) 인감도장날인

불임 : 인감증명서 1부